

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3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을 조사·분석·평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「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」 설치(안 제2조)
- 나.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「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9조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·분석·평가할 수 있으며, 지역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·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 - (1) 입법예고(2013.4.19. ~ 2013.5.9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9조에 따라 평창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·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 회원은 재해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·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.

② 협의회 회장은 건설방재과장이, 간사는 방재 업무 담당이 된다.

③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조사·분석·평가 대상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
2. 협의회 구성 시기 :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

3. 협의회 해체 시기 : 조사·분석·평가 완료 후
4. 협의회 운영 방법 :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(서면 포함)로 결정한다.
5.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해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·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.

1. 방재 관련 협회(지점 또는 지부 포함) 또는 학회(지점 또는 지부 포함)
2. 방재 관련 각급 대학(부설 기관 포함)
3.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(지점 또는 지부 포함)
4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

제4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
3.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현지 조사 업무)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, 지역,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 하여 정한다.

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,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·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·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)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

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·질의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참석자 성명(전문기관 또는 단체명)
3. 의안 내용
4. 회의 결과
5. 참석자 발언 요지
6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회원 직무)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.

제10조(경비 지원)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수당·여비
2.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「통계법」에 따라 조사·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
3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

제11조(운영 세칙)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조례 제10조(경비 지원)

-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수당·여비
2.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「통계법」에 따라 조사·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
3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협의회 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은 “지급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여 다분히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
연락처	(033) 330 - 2406

관계법령

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

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

제9조(재해 원인 조사·분석 등)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·분석·평가할 수 있다.
② 지역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·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